

제300회 임시회
2011.05.20(금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교육위원회

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1.05.20(금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일자 : 2011년 05월 03일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05월 04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05월 16일

(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교육국장 정가홍)

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평생교육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평생교육협의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두도록 「평생교육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 소속의 평생교육협의회 관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함.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: 김왕년)

- 본 조례 폐지안은 「평생교육법」이 전면 개정(2007.12.14.)되어 ‘교육감 소속’으로 운영되던 “평생교육협의회”를 ‘도지사 소속’의 “도평생교육협의회”로 변경·운영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.
- 이 법령에 따라 「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」가 제정(2011.2.11.)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첨부서류 :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 발췌

□ 평생교육법 [법률 제8676호, 2007.12.14. 전부개정/2008.2.15시행]

제12조 (시·도평생교육협의회) ①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평생교육협의회(이하 "시·도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시·도협의회는 의장·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시·도협의회의 의장은 시·도지사로 하고, 부의장은 시·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.

④ 시·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,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,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·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.

⑤ 시·도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